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 안 번호 5965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외교통일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83	박충권의원 등 12인	2024. 6. 28	2024. 11. 7
	2765	윤후덕의원 등 12인	2024. 8. 13	2024. 11. 7
	3791	김건의원·홍기원의원 등 11인	2024. 9. 9	2024. 11. 7

-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 사소위원회(2024. 11. 8.)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1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하 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국내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내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유를 찾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가족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 나.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 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 나.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 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		
	<u>로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		
	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		
	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		
	<u>시할 수 있다.</u>		
제7조(보호신청 등) ①・② (생	제7조(보호신청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 ③ (생략)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 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 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 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 관은 <u>제7조제3항</u>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생략)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u>제4항</u>				
<u>⑥</u> 제4항				
<u></u> 제				
<u>5항</u>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② (생략)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5. (생 략)

<신 설>

- <u>6.</u> (생 략)
- ④ (생 략)

제22조(거수지 보호) (1) · (2) (현
행과 같음)
③
<u>.</u>
1. ~ 5. (현행과 같음)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